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9786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지급 제한 (안 제19조제1항, 제46조의2, 안 별표7)
- 급여제한신청서 제출 절차, 사실관계 확인·조사 주체,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결정방법, 제한된 급여액의 기타 유족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 나. 재심위원회 출석 청구인의 보좌인 동반규정 삭제(안 제52조)
- 청구인 진술 제한 시 현행 「행정심판법」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제

도 등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다. 관련기관 업무 요청자료에 민사재판 판결문 추가(안 제60조제1항제8호)

-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 발생 시 법 제19조에서 구상권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민사재판 판결문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명시(안 제60조제1항제15호)

- 국방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 사실혼 및 친생자 관계 증명방법을 명시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기재되지 않은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 기준을 구체화 하며, 25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군인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2024. 00. 00.)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52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를 “사망·이혼·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

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연금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52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8호 중 “형사재판”을 “형사·민사재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5.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제2조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가. 배우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25세 미만인 자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다.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손자녀·조부모 및 25세 이상인 자녀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7]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제46조의2제6항 관련)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u>법 제52제 1항</u>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u>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u>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신설></p>	<p>제19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 <u>법 제52조제 1항</u>-----</p> <p>-----</p> <p>-----</p> <p>----- <u>사망·이혼·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u> -----</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제46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신청해야 한다.</u></p>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연금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않을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

제52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 국방부장관(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7. (생략)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52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

----- . <후단 삭제>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형사·민사재판 -----

9. ~ 14. (생략)

<신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
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
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기관

9. ~ 14. (현행과 같음)

15.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

16. ----- 제15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연 락 처	(02) 748 - 6852